

「구미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구미시 긴급지원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개별조례를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알기 쉽게 적용하기 위해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「구미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「구미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」로 제명을 개정
- 법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 규정 정비(안 제1조)
- “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” 를 보완·명확히 규정(안 제3조)
- “긴급지원심의위원회” 설치 및 운영, 구성 등 추가(안 제8조~제17조)
- 「구미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이 조례와 통합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긴급복지지원법」 및 같은 법 시행규칙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-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.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제명을 변경하고 긴급지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위원회 운영만을 규정하였던 「구미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본 조례안에 포함시켜 개별조례를 체계적으로 통합하였으며, 광범위하여 모호하였던 일부 긴급지원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음.
- 상위법인 「긴급복지지원법」의 지원기준보다 좁게 설정하였던 긴급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법령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어 긴급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의 권익을 제고시키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에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함.